부동산공시법	오늘의 자가진단	교수: 박정환
	제3장 등기절차 총론	과정: 기본이론(6주차)

- 1.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, 등기권리자가 여러명이고 등기의무자가 1명일 때에는 등기권리자 전원과 등기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.(O, X)
- 2.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(欄外)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.(O, X)
- 3.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.(O, X)
- 4.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.(O, X)
- 5. 외국인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.(O, X)
- 6. 전자신청을 위하여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.(O, X)
- 7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(O, X)
- 8.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.(O, X)
- 9. 외국정부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외교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다.(O, X)
- 10.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.(O, X)
- 11. 등기관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.(O, X)
- 12. 등기관은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.(O, X)
- 13.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.(O, X)
- 14. 등기관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(O, X)
- 15.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할 수 없다.(O, X)
- 16. 등기관은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(O, X)
- 17.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다.(O, X)
- 18. 등기관은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,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(O, X)
- 19.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,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(O, X)
- 20.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.(O, X)
- 21.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O, X)
- 22.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.(O, X)
- [정답] 1.X 2.X 3.X 4.X 5.X 6.O 7.O 8.X 9.X 10.X 11.O 12.X 13.O 14.O 15.O 16.O 17.O 18.O 19.X 20.O 21.X 22.O